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자재산업면허기준

[별표 2]

제 8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1조제 1 항제 8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산업 면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제10조의 2 및 제10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특정지역의 범위) 영 제31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은 시(서울특별시 부산시를 포함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0조의 3 (면허받지 아니한 자재의 사용 승인 신청) 영 제31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면허받지 아니한 주요구조부용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의 서식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 의 부대시설 및 부리시설중 하수도 통신 및 시장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말미에 우편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설 별 종 류	규 격
부대시설 하수도	단지 전체의 우수, 유수, 오수의 처리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서 도시전체의 기본하수도 계획과 합치되는 시설
통 신	300세대당 공중전화 1 대의 비율(전화가설이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부리시설 시 장	1,000세대 이상일 때 1 개소(다만, 1,000미터 이내의 위치에 시장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200세대당 1점포(45평방미터 기준)의 비율의 점포
우편함	500세대 이상일 때 1 개소(다만, 500미터 이내에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 종 별	면 허 기 준	
점토소성 제품(벽 돌 블록) 생산업	1. 배합 및 토련 시설	(1) 분쇄기 : 1 대이상 (2) 토련기 : 1 대이상 (3) 성형기 : 1 대이상 (4) 절단기 : 1 대이상 (5) 콤베야 : 1 대이상
	2. 소성 시설	터널솥(길이 40미터 이상) 또는 윤요(14문이상) : 1 개소이상
	3. 기타 필요시설	(1) 대 지 : 6,600평방미터 이상 (2) 콤베야 : 운반차량 대차 주차 등 운반에 필요한 시설
시멘트가 공 제 품 (벽돌 블 록 기와)	1. 배합 및 혼련 시설	(1) 유압기 또는 진동기 : 1 대이상 다만, 시멘트기와 생산업체는 제외한다.
	2. 양생 시설	(1) 증기양생실 33평방미터 이상(유압기 또는 진동기 5 대증가마다 33평방미터 증가) 또는 수증양생실 66평방미터 이상(유압기 또는 진동기 1 대 증가마다 33평방미터 증가)
	3. 기타 필요시설	(1) 대지 : 990평방미터 이상(유압기 또는 진동기 1 대 증가마다 900평방미터 증가) 다만, 시멘트기와 생산업체는 660 평방미터 이상
P C 판생 산업	1. 콘크리트제조 및 생산장치	(1) 밧차프렌트 : 1 식 (2) 파렛트 및 부품 : 1 식
	2. 반송	이동크레인 및 기타 운반시설 : 1 식
	3. 증기양생시설	보이러·시설 : 1 식
	4. 기타 필요시설	(1) 대 지 : 9,900평방미터 이상 (2) 물저장탱크 : 1 식 (3) 철근가공설비 : 1 식 (4) 시험실 : 20평방미터 이상 (5) 압축강도시험기 : 1 대이상 (6) 건조기 : 1 개이상 (7) 공기량측정기 : 1 개이상

별표 2 및 별표 3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주택용 자재의 품질 및 규격

종 명	규 격	종 질	
소성벽돌	(단위 : 밀리미터)		
	규격	길 이	두께
	표준형	190	90
	허용치	±3	±3
속성벽돌	(단위 : 밀리미터)		
	구분	길 이	두께
	표준형	150	290
	허용치	±4	±4
시멘트벽돌	(단위 : 밀리미터)		
	구분	길 이	두께
	표준형	100	290
	허용치	±4	±4
시멘트블록	(단위 : 밀리미터)		
	구분	길 이	두께
	표준형	150	290
	허용치	±4	±4
시멘트블록	(단위 : 밀리미터)		
	구분	길 이	두께
	표준형	150	290
	허용치	±4	±4

2. 내부(속면부분)				
구 분	속 면 부 분	최 소 살		
		기 본 부 록 (중근을 삽입하는 속면부분)	최 근 용 부 록 (중근을 삽입하는 속면부분)	기 타 의 부 분
두께 150밀리미터 이상의 블록	단면적 (평방센치미터)	최소 60	7이상	6이상
	최소 두께 (밀리미터)	25이상	20이상	20이상
두께 100밀리미터 이상의 블록	단면적 (평방센치미터)	30이상	5이상	5이상
	최소 두께 (밀리미터)	20이상	20이상	20이상

P.C관 관개 및 상판

주택의 형,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생산업자가 정하되 그 생산품의 최소 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밀리미터)

구 분	허 용 치				거부치
	배 전	스 트	리 프	계 단	
관 외 직 이	±5	±5	±5	±5	±3
관 외 두께	±3	±3	±3	-	±1
관 외 방향	±3	-	-	-	-
	±3	-	-	-	-
관 외 두께	±3	±3	±3	±3	±3
	±3	±3	±3	±3	±3
관 외 직 이	±3	-	-	-	-
관 외 두께	±3	-	-	-	-
관 외 직 이	±3	-	-	-	-
관 외 두께	±3	-	-	-	-
관 외 직 이	±3	-	-	-	-
관 외 두께	±3	-	-	-	-

별지 제 1호식식중 3소화대상별 국민주택채권 자금 조성내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관 명					
분류번호 (전화번호) 19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주택과장					
제목: 소화대상별 국민주택채권자금 조성내역 발신기관장 편인					
(단위:천원)					
구분	전기분	자 금 조 성 내 역		비 고	
		14	누 계		
소화대상별	까지	금 액	구 성 비 %	금 액	구 성 비 %
계					
부 동 산 동 기					
진 속 허 가					
전 화 가 설					
자 식 품 영 업	속 박 업				
	사 용 행 위				
	유 기 장				
	목 육 방 업				
기 타	기 타				
	기 타				
자 전 설 업	공용수면매립				
	주택자재생산업				
기 타	기 타				
	기 타				
중 기 등 록					

시멘트블록

(단위 : 밀리미터)

구 분	규 격	종 질		
		길 이	두께	두께
표준형		190	90	57
		±3	±3	±3

시멘트블록

(단위 : 밀리미터)

구 분	규 격	종 질		
		길 이	두께	두께
표준형		390	190	190
		390	190	150
		390	190	100
		290	190	190
		250	190	150
		290	190	100
허용치		±2	±3	±2

2804-05-28D
1975. 3. 24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 2 호서식 중 4 부래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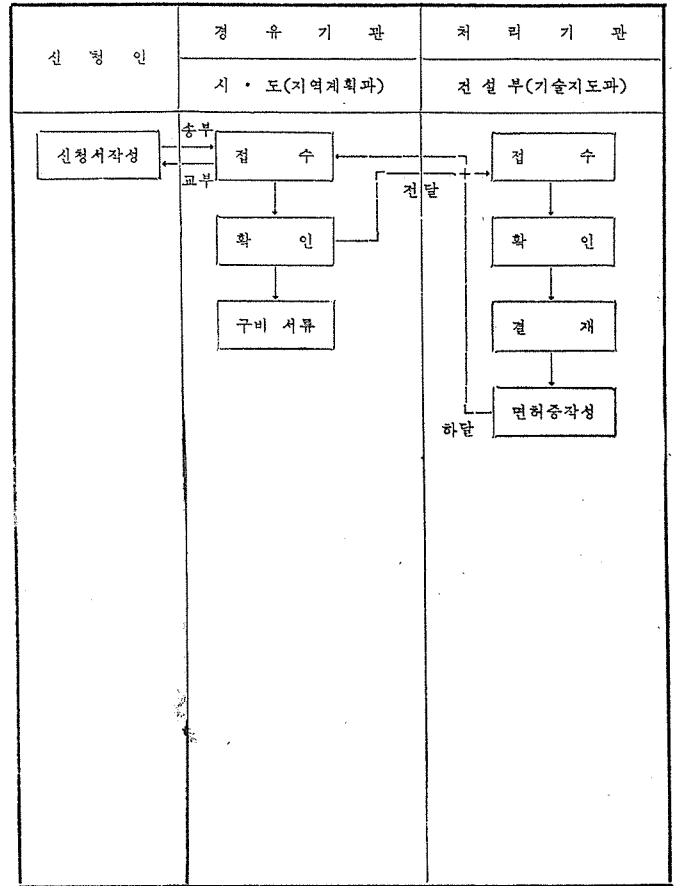
[별지 제 2 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19			
분류기호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주택과장 제목: 부대 및 복리시설 설치계획		발신기관장 관인 (단위: 천원)	
부대시설		복리시설	
시설비	사업비	시설내역	사업비
전기		어린이 놀이터	개소 평방미터 그네 개 미끄럼틀 개 철봉 개 모래판 개 기타
도로		시장	신설: 개소 평방미터 인근: 미터지점에 시장있음
상수도		의료시설	신설: 병원 개소 약국 개소 인근: 미터지점에 병원약국 있음
하수도		공중목욕탕	신설: 개소 평방미터 인근: 미터지점에 학교동회있음
통신시설		집회소	신설: 개소 평방미터 인근: 미터지점에 공원운동장있음
보안 등		오물받기 개수기 시설	개소
테레비전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신설: 개소 평방미터 인근: 미터지점에 운동장공원있음
기타		우편함	신설: 개소 인근 미터지점에 우편함 있음
계		계	

2804-05-29D
1975. 3. 24 승인

190mm x 268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 4 호서식]

주택자재생산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④상호또는명칭	⑤전화번호		
	⑥영업소소재지			
⑦자본금 또는 재산				
⑧생산품목				
⑨주요시설 및 장비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자재생산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10,000원
2.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입원전원) 1부				
3. 대지, 시설 및 장비보유증명서 1부				
4.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804-05-198 E
1975. 3. 24 승인

190mm x 268mm 신문용지 (54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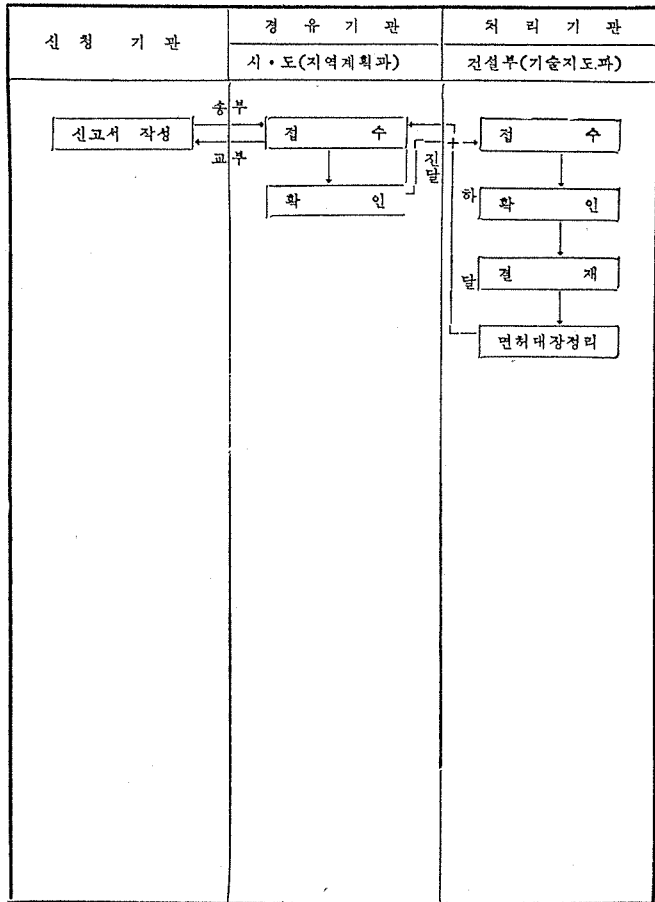
[별지 제 5 호서식]

국민주택자재생산업면허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또는명칭	④전화번호		
	⑤영업소소재지			
⑥ 면허 품 목		⑦ 면허년월일	19 . . .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⑧대 표 자			
	⑨상호또는명칭			
	⑩영 업 소 재 지			
⑪주요시설 및 장비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97 . . .				
신청인 (인)				
건설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대표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초본(법인인 등기부등본) 1부 신원증명서 1부 재산증명서(개인에 한함) 2부				없음
2. 상호 또는 명칭인 경우는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영업소소재지인 경우는 영업소소재지 증명서 1부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주요시설 및 장비인 경우는 대지, 시설 장비 보유변경증명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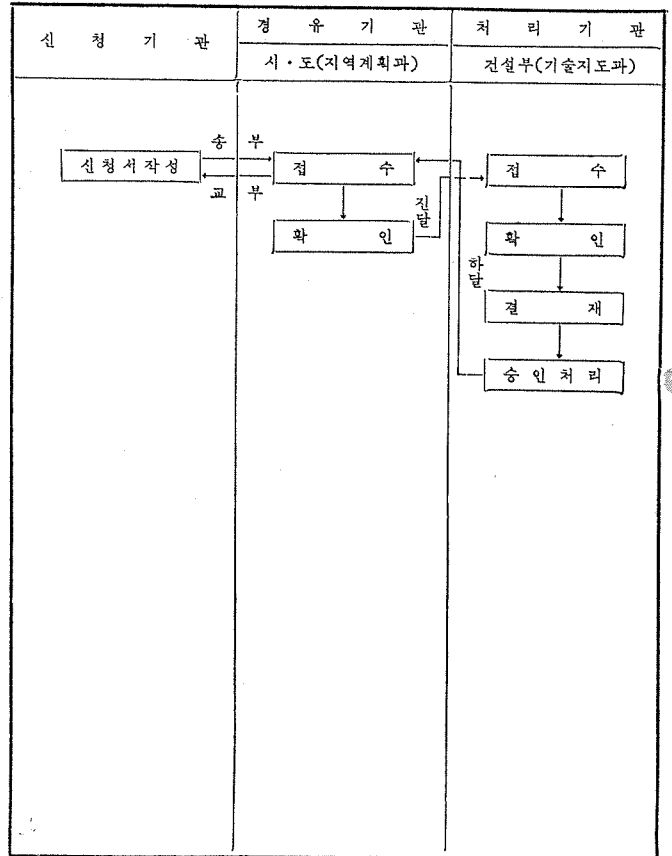
2804-05-20 E
1975. 3. 24 승인

190mm x 268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8-2호서식]

면허받지 아니한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1. 대표자		2. 주민등록번호	
	3. 상호명		4. 전화 번호	
	5. 주소			
6.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19			
7. 사업 위치				
8. 사업 기간	19 ~ 19 까지			
사업량		구조내역	승인신청자재내역	
9. 단 류	동	13. 기초		17. 품 명
10. 아파트	동 세대	14. 벽 체		18. 수 량
11. 연 립	동 세대	15. 지 붕		19. 품 명
12. 계	동 세대	16. 기 타		20. 수 량
시멘트제품 등록업체	21. 등록번호		23. 상호명	
	22. 대표자명		24. 소재지	
25. 신청이유				
주택건설축진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④				
건설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10조의 2 및 제10조의 3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